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 법안 내용 분석

‘08.12.10(수)

□ 대상법률 : 미디어관련 7개 법률 :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사업법, 전파법, DTV전환특별법, 망법(세부명칭 아래표 참조)

□ 평가

- 매체 융합의 환경변화에 부응,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한나라당)
-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출범시켜 권언유착을 통한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기획입법이자,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인 조중동에 대한 보은입법(민주당)
-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허용으로 보수 세력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언론 장악력을 강화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現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원천봉쇄하려는 언론관계약법(언론노조)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법안 명	주요 내용
신문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현재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 부분 개정 i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i 신문지원기관 통합 추진 i 인터넷포털 뉴스 신문법 규율대상에 포함 i 인터넷포털 뉴스 준수사항 명시 - 기사배열 기본 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위헌 판결 규정 삭제 - 정정보도 청구소송 가처분절차 등 i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확대 -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피해 포함
방송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 지상파 20%, 종편 및 보도 PP 49%까지 i 일정 수준의 외국자본 진출 가능 - 지상파 금지, 종편 및 보도 PP 20%까지 i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30%에서 49%로 상향 조정 i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 동일하게 통일 i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i 허가(승인 등록)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제재 조치 허용 i 방송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에 과징금 부과 허용 i 방송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 개념 명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IPTV에서의 종편 및 보도 PP도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 참여 허용 - 방송법과의 형평성
전파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 ‘12년 ATV 종료 및 DTV 전환 촉진 및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 i 반의사 불벌죄 규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i 권리침해 주장자 신청 시 정보통신제공자 24시간내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관련자 통보, 고지 i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게재자 이의신청 가능 및 72시간 내 판단

□ 개정안 검토

-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폐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 우려
 - ⇒ 방통위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기준 완화(3조→10조)에서 더 나아간 초강력 완화 조치
 - ⇒ 삼성, 현대, SK, LG 등의 대기업도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가능하며, 20%를 보유한 5개 기업 합작 시 완벽한 '재벌 방송' 탄생
 - ⇒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별신문 연합 시 '대기업+수구신문' 방송 출현 가능하며, 삼성과 중앙일보 합작시 "삼성재벌방송" 탄생 가능
 - ⇒ 보도·종편 PP의 경우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신문이 각각 49% 지분 보유를 통해 98%까지 지배 가능
 - ⇒ SBS 최대 지분 보유사의 추가 지분매입 추진이 예상되며,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 시도를 희망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YTN 지분인수 시도 예상
 - ⇒ 방송 내용이 시장·산업·오락중심으로 왜곡, 편향될 가능성
 - ⇒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
 - ⇒ 지상파 및 보도PP 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로 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압박 수위 고조 우려
-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문화주권 침해 우려
- 지상파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화 및 제재조치 명시로 지원정책 미흡시 방송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DTV 전환비용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아날로그 방송주파수 대역의 회수 및 경매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입지 축소 우려
-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 우려
- 향후,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표명에 따른 방송 구조 개편 우려
 - ⇒ KBS에는 수신료 인상을 빌미로 구조조정 강요, MBC에는 공영과 민영방송의 기로에서 한쪽 선택 강요

○ 한나라당 발의 언론관계법안 수정내용 비교 및 분석(방송분야)

구분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석	비고
		현행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나경원의원등 17인) '08.12.03	· 지상파·종편/보도 PP에 대한 1인 소유제한 완화 (30%⇒49%)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8조)	·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민영방송·보도PP 최대주주 영향력 강화 · 상호겸영/교차소유 제한은 현행대로 시행령에 위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적용 예외 (KBS 및 EBS)	
	·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 (금지⇒20%) · 대기업·신문/뉴스	·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8조)	·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	· 대기업 지상파 참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완화(3조⇒10조)보다 한 발 더 나간 초강력 법안 · SBS 등 경쟁력 있는 민영방송 가치상승 · YTN 등 보도PP M&A 가능	

구분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석	비고
		현행	개정안		
	통신의 종편/보도PP 지분소유 허용 (금지 ⇒49%)		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대기업과 족벌신문이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지상파, 케이블방송 시장 공격적 참여 가능	
	·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방송 지분소유 완화 (33% ⇒49%) · 대기업의 케이블 SO,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 폐지 (49% ⇒삭제)	·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 '06.11월,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지분제한 완화(33% ⇒49%)에 이어 완전 폐지 · KT, SKT의 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에 대한 추가 출자 가능 · 대기업 지분 확대 시 상업성, 오락성 증대 · 다채널 유료 매체에서 공공채널 입지 축소	
	· 종편/보도PP · 케이블SO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 (금지 ⇒20%)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14조1항)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방송구역수 제한을 완화(1/5 ⇒1/3)한 시행령 개정 이후 외국자본의 진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케이블 MSO 가치 상승 예상 · 케이블SO 영향력 증대로 지상파 입지 축소 ⇒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확대 방안 필요	
	·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완화 (33% ⇒49%)	· 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14조2항)	·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 산업 논리 강화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후퇴 · 위성방송의 상업화	
	· 케이블SO/RO · PP · 공동체라디오 승인 유효기간 연장 (5년 ⇒7년)	·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케이블 SO 가치 및 입지 강화 ·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기간도 전파법 개정으로 연장 (전파법 제22조 제1항 : 5년 이내, 동법시행령 제 36조 : 3년)	

구분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석	비고
		현행	개정안		
	· 재허가 탈락에 따른 방송공백 예방장치 마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8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 IV 재허가 취소에 따른 정파 사례 재발방지책으로 판단 · 시행령 위임사항을 모범으로 상향 조정	
	· 가상광고, 간접광고 실시 근거 마련	·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舊방송위, 가상광고도입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07.8월 입법예고) · 신문방송경영 허용, 유료방송 중심 규제완화에 대응한 방송전반의 진흥책으로 판단 · 간접광고 관련 자체, 외주 제작 비리 발생 가능	
	· 방송심의규정, 협찬 고지규칙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5천만원 이하)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 · 방송사 입장에서 제재조치 부담 증대 · 시사프로그램 및 보도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강화 우려	

구분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석	비고
		현행	개정안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DTV전환특별 법개정안 (안형환의원등 17인) '08.12.03	·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에 관한 사항 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8.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4. ----- 활성화 및 지원-----	· '12년 ATV 종료에 대비 방송사에 대한 지원정책 제도화	
	· 디지털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근거 마련	· 제7조(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한다.	·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DTV 전환 방송사 제재 근거 마련 및 광고 규제 완화 등 촉진책 동시 제시 · 방통위가 기한을 정하여 방송사의 DTV 전환 의무 부과 가능 및 경우에 따라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제재권한 부여 · 전환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할 경우 방송사 입장에서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광고규제 완화에 따라 매체영향력이 있는 방송사의 광고매출 증대 예상	
	· 여유주파수 할당 대가를 디지털 전환에	제12조(방송보조국의 개설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	·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텔레	· 기존 사업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방송주파수대역에 대한 경매제 도입 기정사실화	

구분	주요내용	수정 내용 비교		분석	비고
		현행	개정안		
	사용	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국을 허가할 수 있다.	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주파수 회수 및 경매제 도입 시 지상파방송사 입지 대폭 축소	
IPTV사업법 개정안 (구본철의원등 17인) '08.12.03	·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IPTV 종편/보도PP 지분소유 규제 허용 (금지⇒4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IPTV의 신문방송 경영 허용 · 방송법 개정안과 허용범위(49%) 동일 · 향후 IPTV 활성화시 대기업 자본 대거 유입 및 장악 우려	
	· IPTV 종편/보도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 (금지⇒20%)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9조)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IPTV의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 방송법 개정안과 허용범위(20%) 동일 · 대규모외국자본에 의한 IPTV 장악 우려	
전파법 개정안 (진성호의원등 17인) '08.12.03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 (5년⇒7년)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 민영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 지상파방송 진입규제완화와 함께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진입 유인책 · 방송협회 정책건의사항 반영 · 지상파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방안이지만, 정부출자방송사인 EBS나 KBS에게는 행정력 투입요소 절감이외 영향 미미	
정보통신망법 (나경원대표발의) '08.11.3	· 사이버모욕죄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정권 비판적 여론 원천봉쇄 우려 ·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운용방식 변경 필요	

□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

구분	내용 비교		분석
	현행	한나라당 개정안	
· 신문·방송 경영 금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경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15조 2항)	· 신문·방송 경영 금지 조항 전면 삭제.	· 한나라당 안은 신문·방송 경영을 완전 허용해 조중동이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줌.
· 일간신문 복수소유 금지	·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뉴스통신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15조 3항)	· 복수소유 제한 조항 전면 삭제. ·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3조 1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3조 2항)	· 현행법에서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일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 · 한나라당 안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을 완전히 없애 신문사간 M&A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함. 조중동 등 독과점신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 신문 지원 기관, 신문발전기금	·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다.(27조) · 위원회는 9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국회의장 추천 2인, 한국신문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언론학회·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인씩을 포함.(28조) · 신문유통원을 법인으로 둔다.(37조)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법인 형태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28조) · 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29조 2항) ·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해 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영. 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되는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 관련 심의를 한다.(35조)	·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통합된 한국언론진흥재단 독립제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정부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 언론진흥기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신문사 길들이기를 위한 당근으로 전략할 우려.
· 경영자료 신고 의무	· 일간신문 사업자는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신발위에 신고해야 한다.(16조)	·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삭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론집중도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16조)	· 한나라당 안은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무시하고 조중동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

구분	내용 비교		분석
	현행	한나라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신문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뉴스서비스를 억지로 신문법 규율대상으로 끌어와 포털에 대한 정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 · 특히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라는 것은 신문의 편집방침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조중동은 이에 대해 편집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뉴스에 대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인터넷신문·포털에 대해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디지털 뉴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여론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 ·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

□ 주요 정당별 입장 요약

법안	현행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신문법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30%, 3개 이하 사업자의 합이 60% 이상 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위헌조항이므로 삭제	삭제 반대, 위헌 취지에 맞게 비율 상향 조정	개정 검토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소유 일률 금지	헌법 불합치이므로 삭제	현재 판결 취지에 맞게 허용 또는 규정 완화	개정검토
	신문, 방송 경영 금지 조항	규제 폐지	폐지 절대 반대	단계적 허용
	인터넷 포털 관련 규정 없음	인터넷뉴스 서비스 별도 분류해 준수사항 규정	신문법 관련 조항 삽입 반대. 언론중재법 에서 논의 가능	미확정
언론중재법	인터넷포털은 중재대상 아님.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IPTV 추가	논의 가능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 추가
방송법	대기업.신문.통신의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금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보도PP는 49%까지 허용	신문 방송 경영 및 지분소유 절대 반대	단계적 허용
	채허가 기간 (5년 범위 내)	7년 범위 내	검토 중	5년 범위 내
IPTV법	대기업.신문.통신의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금지	49%까지 허용	절대 반대	방송법과 연계해 신증 접근
DTV전환 특별법	신설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방송국 구축 의무 부여	강제 규정화 반대	미확정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의사불법죄)	절대 반대	반대